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87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봉담아동청소년터장 직인 및 남양아동청소년센터장 직인 폐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